제 2002-03 호

#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신고필증

1. 상호(명칭): (주)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

2. 성명(대표자): 서울 지사장 (생년월일: )

3. 주소(사업장소재지):

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신계리 219-60번지

(전화번호: 0317799114 )

4.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내역

가. 관리대상시설의 종류 및 명칭 :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송유관시설

나. 오염물질의 종류 및 저장용량: 저장시설:총1기 총용량:200,000.00

다. 그 밖의 주요내용: 부식,산화방지시설,누출방지시설,수

유관중앙제어감지시설

5.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내역

가. 방지시설의 종류 : 부식 및 산화방지시설, 누출방지시설, 누출감지시설, 송유관중앙제

어 감지시스템

나. 설치내용 :

다. 그 밖의 주요내용: 없음

6. 누출검사대상시설 여부

[□] 해당 [□] 해당하지 않음 [■] 확인을 신청하지 않음

「토양환경보전법」 제 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0조에 따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설치(변경)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2002년 7월 2일

경기도 안성질량들

## <변경 사항>

일 자	내용	화	인
2007-08-24	대표자변경 : 수도권지사장 -> 서울지사장	확인	

# <행정처분일자>

일	자	내 용	확	인

### <저장시설>

시설명	오염물질	용량(단위)	수량(기)	완공일	시설형태
유류 저장시설	제1석유류 (석유류 )	200,000.0	1		

## <참고사항>

일	자	내 용	확	인